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국무총리지시 제4호

720-2014

1986.5.21.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협조 강화

정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안예정 법률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부처는 반드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조하고
국무회의시에 협의사항으로 보고하여 행정부로서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당과 협의함으로써 의원입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4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07, 10, 11, 15-18, 20-35, 60, 61)

분류기호 문서번호		국무총리 지시 제 4 호 / 86	기안용지 (전화: 720-2014)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1986. 5. 21.			222	JK 5/21
보 조 기 관	조정관		협 조 기 관	정무장관	문 제
심의관					1986. 5. 22
서기관					제 521
기안책임자	박철근		발	송	
경 유 수 신 참 조	(제1안) 내부결재		발 신 명 의	1986. 5. 22	
제목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사전 협의 강화 지시				
국회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관한 정당과 정부 외의 협의과정에 주로 당해부처만 참여하게 되어 정부 내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별안과 같이 지시안을 마련, 각부처에 시달코 자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안"					
국무총리 지시 제 호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협조 강화					

1505-25(2-1)일(1)갑
85. 9. 9. 송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정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안에정 법률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부처는 반드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조하고 국무회의시에 협의사항으로

보고하여 행정부로서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당과 협의함으로써 의원입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07, 10, 15 - 18, 20 - 35, 60, 61)

(제 2 안)

수 신 : 대통령 비서실장

참 조 : 정무 제2수석비서관

발 신 : 행정조정실장

제 목 :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협조 강화 지시 시달 보고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협조 강화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국무총리 지시를 시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 부 : 국무총리 지시 사본 1부. 끝.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국무총리지시 제4호

720-2014

1986.5.21.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협조 강화

정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안예정 법률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부처는 반드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조하고
국무회의시에 협의사항으로 보고하여 행정부로서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당과 협의함으로써 의원입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07, 10, 11, 15-18, 20-35, 60, 61)

國務會議時 國務總理 指示事項

(85. 9. 19. 第42回 國務會議)

두 번째는 이제 정무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
이제 의원입법을 하기 위해서 당쪽에서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한다 할 때에
반드시 그 당과 연락을 하는 부서는 정부 내의 유관부서와의 협조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부탁 드립니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당과 협의할 때에는 그런 일이
본의 아니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을 맡한다고 할 때에는 관련부서
당과 협조하는 부서가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것은 정부 내 어디하고 관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총리실에도 얘기를 해 주어서 총리실
에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 9. 19.

國務會議時 国務總理 指示事項

1. 秋夕에 즈음한 몇가지 當付

- 해마다 秋夕이 다가오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滯拂勞賃, 盛需品需給, 歸省客輸送問題등에 대하여 關係部處에서 잘 챙기고 있을 줄 압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對備해 주기 바람.
- 그리고 우리社會에는 名節때면 親戚, 親知나 이웃사이의 人情으로 賞物을 주고 받는 美風이 있습니다만, 公職紀綱 刷新運動, 外債節減運動이 汎社會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지금 적어도 公職社會에서는 可及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各部長官들께서는 啓導에 힘써 주기 바람. 다만, 外交使節이나 親戚, 親知등 賞物이 不可避한 境遇에는 사과나 배. ~~식료수 등~~ 우리 農村에서 生產되는 것으로 賞物하는 것이 좋겠음.

2. 議員立法의 事前協議 強化

- 議員立法과 關聯하여 한가지 當付코자 함.
- 議員立法의 推進過程을 보면 黨과 主務部處間에 協議가 主로 이루어짐으로써 關係部處와의 事前協議는 充分히 이루어지지 않는 傾向이 있음.
- 따라서 앞으로 議員立法을 推進하는 경우 黨에서 協議要請을 받은 部處에서는 반드시 關係部處와 먼저 協議하고, 國務會議에도 報告하여 內閣으로서 統一된見解를 가지고 黨과 協議하여 推進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協議
강조

政務
總理

訓令制定時 問題点 및 檢討意見

1. 問題点

議員立法이라 할지라도 그 效率的인 執行과 施行過程上 나타날지도 모르는 問題点에 대한 對備를 위해政府의 立法過程과 마찬가지로 政府內 所管部處 및關係部處間의 事前協議와 法制處 審查는 바람직함.

그러나 이와같은 内容을 國務總理訓令으로 公文化하여 ,各部處에 示達하는 경우, 政府가 國會의 立法活動에 관여하는 듯한 印象을 주게되어 자칫 不必要한 論難을 起시킬 素地가 있다고 판단됨.

[参考] 議員立法의 問題点에 대한 制度的 補完
議員立法의 경우 法律의 執行은 立法에 參與하지 못하는 行政府의 責任이므로 行政府 立場에서 法律案에 대하여 異意가 있을때 大統領이 法律案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2. 檢討意見

◦ 國務總理 訓令은 行政府內에서만 效力を 미치므로
法上 問題는 없으나 政治的인 問題提起의 對象은
될 수 있으므로 從來와 같이 國務會議時 口頭指示로
再強調 하실 것을 建議함

(85.9.19. 國務會議時 既 指示함: 指示內容 別添)